



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
Seoul Council on Social Welfare

『희망마차』 사업 업무협약서

주식회사 이마트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“희망마차 사업”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주식회사 이마트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희망마차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역할 및 활동) 이마트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.

1. 주식회사 이마트는 시율시내 각 지점들과 연계하여 희망마차사업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기금(11개월 4억 2천만원)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한다.
2. 서울특별시는 희망마차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25개 자치구 및 희망온돌사업 거점기관 등과 연계하여 주식회사 이마트,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협력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.
3.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주식회사 이마트,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희망마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한다.

제3조 (세부시행) 이 협약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이마트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체결하는 업무협력서에 따른다.

제4조(협약의 효력기간)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2012년 협약체결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이마트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갱신 할 수 있으며, 이마트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협약 갱신 의사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 협의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마트와 서울특별시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다른 이의제기(통보)를 하지 않으면 협약기간은 다음 연도로 자동 연장된다.

제5조(기타)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,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.

2012년 4월 17일

주식회사 이마트
대표이사 최병렬

서울특별시
시장 박원순

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
회장 황용규

崔炳烈

박원순

황용규